

공중인가
범무법인 비 전

[별지 제33호서식]

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

(전화) 02-6743-7001

등부 2022년 제 32859호

인 증 서

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 9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2022 년 제 2 차 임시주주총회의사록

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"회사")의 정기주주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다..

일 시: 2022년 08월 30일 (화) 오후 3시

장 소: 본점 회의실(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)

1. 주 주 총 수 : 2명
2.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: 60,000주
3. 출 석 주 주 수 : 2명
4.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: 60,000주

의장 대표이사 박영희는 본 회의의 소집에 대해 모든 주주가 그 소집절차의 단축 또는 생략에 동의하였는바, 본 회의의 소집 절차가 정관에서 정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출석한 주주가 정족수에 충족하였으므로,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였다.

□ 제1호 의안: 정관 개정의 건

의장은 정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참석한 주주에게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, 출석주주들은 심사숙고 후 서면결의서를 포함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다.

개정 전	개정(안)	비 고 (개정사유 등)
제 1 조 (상호) 회사의 상호는 국문으로는 "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 9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 회사"(이하 "회사"라 한다)라 하고, 영문으로는 "HANA TRUST NINE CO., Ltd." 라 한다.	제 1 조 (상호) 회사의 상호는 국문으로는 "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 7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 회사"(이하 "회사"라 한다)라 하고, 영문으로는 "HANA TRUST SEVEN CO., Ltd." 라 한다.	1. 상호의 변경

제 9 조 (주식의 종류 및 보통주식의 내용)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, 그 종류는 보통주식, 종류주식으로 한다. ② 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, 종류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다. ③ 회사가 발행할 주권은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, 10,000주권 8종으로 한다. 단, 주주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권종의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.	제 9 조 (주식의 종류 및 보통주식의 내용)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, 그 종류는 보통주식, 제1종 종류주식, 제2종 종류주식으로 한다. ② 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, 제1종 종류주식, 제2종 종류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다. ③ 회사가 발행할 주권은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, 10,000주권 8종으로 한다. 단, 주주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권종의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.	1. 제2종 종류주식 추가
제 9 조의 2(종류주식의 내용) ① 회사는 종류주식을 [오백만]([5,000,000]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.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누적적, 비참가적이며 의결권이 있다.	제 9 조의 2(종류주식의 내용) ① 회사는 제 1 종 종류주식을 [오백만]([5,000,000]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.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누적적, 비참가적이며 의결권이 있다. ② 회사는 제 2 종 종류주식을 [오백만]([5,000,000]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.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누적적, 비참가적이며	1. 제2종 종류주식 추가 2. 배당의 수정

② 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. 1. 최우선으로, 종류주식에 대하여 1 주당 1 주의 발행가액에 연 6.0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 2. 제 1 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 ③ 어느 사업연도에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해당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. ④ 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.	의결권이 있다. ③ 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. 1. 최우선으로, 제 1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 주당 1 주의 발행가액에 연 7.5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 2. 제 1 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제 2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 주당 1 주의 발행가액에 연 5.0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 3. 제 2 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 ④ 어느 사업연도에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해당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. ⑤ 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.	
---	--	--

1. 최우선으로, 종류주식에 대하여 누적된 미배당분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분을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. 2. 제 1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3. 제 2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4. 제 3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 중 30 제 1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순차적으로 동등하게 분배하고, 나머지 70%는	1. 최우선으로, 제 1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누적된 미배당분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분을 제 1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2. 제 1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 2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누적된 미배당분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분을 제 2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3. 제 2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 1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4. 제 3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 2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5. 제 4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6. 제 5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 중 25.0% 및 5.0%를 각각 제 1 종 종류주식 및 제 2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순차적으로 동등하게	
--	--	--

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	분배하고, 나머지 70%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 1 종 종류주식, 제 2 종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	
제 13 조 (신주의 배당기산일) 회사가 어느 사업연도의 중간에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 단, 제 1 기 사업연도에 한하여 회사가 사업연도 중간에 발행한 종류주식 및 보통주의 경우 해당 신주의 배당금 계산에 있어서의 산정 기간은 주금 납입일(해당 사업연도에 신주 발행이 수 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납입된 금액별로 기간을 계산함)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.	제 13 조 (신주의 배당기산일) 회사가 어느 사업연도의 중간에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 단, 제 1 기 사업연도에 한하여 회사가 사업연도 중간에 발행한 제 1 종 종류주식, 제 2 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의 경우 해당 신주의 배당금 계산에 있어서의 산정 기간은 주금 납입일(해당 사업연도에 신주 발행이 수 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납입된 금액별로 기간을 계산함)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.	1. 제2종 종류주식 추가
신설	부 칙<2022.8.30.개정> 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2 년 8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.	1. 조항의 신설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 의안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고하고 폐회를 선언하다.

(폐회시간 : 오후 4시)

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
날인하다.

2022년 08월 30일

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의장 겸 대표이사 박영희



기타비상무이사 정현섭



공증인가
법무법인 비 전

[별지 제37호서식]

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

(전화) 02-6743-7001

등부 2022 년	제 32859호
인 증	
위 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----- 의	
2022년 08월 30일자 임시주주총회 -----	
의사록에 기재된 의결권자 주주 겸 의장 대표이사 박영희, 주주 겸 기타비상무이사	
정현섭 들의 각 대리인 조진원 은 -----	

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, -----	
그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. -----	
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	
을 확인 하였다. -----	
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들의 각 대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----- 에 의하여	
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.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	
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.-----	
2022년 08월 31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.	
공증인가 법무법인 비 전	
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소속	
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	
공증담당변호사  인	
아 래	
1. 공증촉탁서, 2. 진술서, 3. 확인서, 4. 주주명부, -----	
5. 위임장, 6. 인감증명서, 7.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8. 정관 -----	